

소방설비 분야의 책임감리 범위에 관한 비교연구

- 전기감리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오상환*, 윤명오**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 설비 분야의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법으로 규정된 소방 감리제도는 시행령으로 규정된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성이 높았다. 또한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 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건축 준공 후에도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좀 더 면밀한 연구가 이루어져 규제의 불합리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설계, 시공감리, 유지관리, 규제

1. 서론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및 대형화가 진전됨에 따라 인명과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이 확립·강화되고 있다. 특히, 화재로부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소방설비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비의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소방 감리제도 또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건축물은 설계와 시공감리과정에서 양질의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건축물 준공 후에는 철저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소방감리원은 소방방재설비의 품질관리강화는 물론 성능위주의 소방 설비 시스템이 구축되게 함으로서 화재발생 시 소방방재설비가 완벽한 성능을 발휘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

* 제1저자, ** 교신저자.

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시키도록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소방감리분야의 실무에 있어서는 현재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방감리의 제도적 요소들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박재관, 2011). 소방관련 기술인의 과실에 대하여 관련 법령들에 의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여 소방 감리의 전문 기술인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타 분야와는 달리, 공무원들에게 재량권이 편중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설계, 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의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도 우리의 화재소방관련 법령 및 제도의 불명확성과 불합리성의 존재에 대한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주장들은 소방 설비 분야에 있어 공무원과 전문인들 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전문인들의 사기저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신성훈, 2006).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방 감리분야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감리분야의 규제합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고에서는 가장 근원적이고 시급하다고 할 수 있는 소방감리분야의 전문인들의 책임범위를 다른 분야(전기)와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그리고 현재의 제도에 대한 전문인들의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II. 소방감리의 이론적 고찰

1. 소방감리의 의의 및 범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건설경기의 활황으로 인한 공기단축 및 부실시공의 문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성수대교 붕괴사고 등 대형사고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건설공사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감리제도가 도입되었다. 소방에 대한 감리제도는 1993년 12월 제 12차 소방법규의 개정 에 의하여 도입되었고 약 2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보완한 뒤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인 소방감리 업무가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최만철·김병석, 2011).

소방감리제도는 1995년 1월 도입되어 민간 전문기술자에게 소방기술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며 소방시설 대상물을 안전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김종우, 2009). 소방감리제도는 크게 건축부문 감리의 한 부분이지만 특히, 화재발생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 및 건축물 준공 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볼 때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최만철·김병석, 2011). 건축사법 제2조에 의하면 “공사감리(工事監理)”라 함은 “자기 책임 하에(보조자(補助者)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소방공사감리업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리원”이란 “소방공사감리업자에 소속된 소방기술자로서 해당 소방시설 공사를 감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방감리에 관한 관련규정은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다만, 자동 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소화용수시설만 설치되는 공사는 제외)와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에 대해서는 상주공사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에서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1>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업무의 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 기계·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2. 소방 공사 감리의 선행연구

현재, 소방 감리제도의 책임범위에 대해 현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문제점에 비하면, 그에 관한 연구들은 찾기 힘들다. 그렇지만, 소방감리 제도의 다른 부분들을 고찰한 연구들은 몇몇이 존재한다. 최만철·김병석(2011)은 상주 소방감리업무 수행시의 문제점에 대해 소방감리자, 소방공무원, 건설시공사 및 시행사 업무 담당자에 대해 각각 30명씩 총 120부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업무수행 측면, 소방기술 인력관리, 소방 법규적 측면 등 3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누어 문제점을 다루었다. 현장업무 수행측면에서는 착공 시, 시공과정, 완공시점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소방기술 인력관리 측면으로는 감리원의 인력관리와 도급의 문제를 다루었으며, 소방 법규적 차원에서는 잦은 소방법의 개정, 감리결과보고서의 처리지연, 상주소방감리 대상 확대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용(2009)은 소방공사 및 유지관리에 대해 소방법령의 운용실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소방 시설공사 등의 수의계약으로 인한 질적 저하 우려 문제, 소방시설업의 학·경력 인정 기술자 제도로 인한 역량의 하향평준화 문제, 확실적인 감리원의 배치기준, 보조감리원의 배치기준 미 존재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이재성(2011)은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개선방안으로 도급방식의 현실화, 건설 사업관리(CM) 도입, 설계 감리제도 도입, 완공검사 방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재관(2012)은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소방감리원 배치 개선, PQ제도 및 적격심사를 위한 제도개선, 감리업무 수행지침서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김중우(2009)는 소방감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감리 기준 적용 일원화, 설계도서의 부실 방지 대책, 부실감리 방지, 보증보험의 활성화, 감리자 선정 평가 기준의 개선 등을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들을 포함한 기존의 연구들에서 소방 설비공사의 감리제도의 문제점들을 다루었다. 그렇지만, 소방 감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업무책임범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연구는 찾기 힘들다.

III. 소방 감리인원의 책임범위 및 문제점

1. '시행령'을 넘어 '법' 수준에서 규정된 경직성

현행 법령에 따르면, 신축건축물의 소방분야의 감리원의 책임범위는 소방시설공사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전기 분야 감리원의 책임범위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소방분야와 전기 분야의 감리의 기본적인 차이는 소방시설분야는 법의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기 분야는 '시행령'의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보면, 이러한 차이는 해당 조문의 개정의 용이성에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즉, 소방시설분야의 감리는 법에 의해 규정되므로, 시행령에서 주로 규정되고 있는 전기 분야에 비해서는 좀 더 엄격성을 띄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감리제도에 관한 부분은 규제적 사항이기 때문에 소방 시설분야의 감리제도가 규제적 시각에서는 전기 분야에 비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 소방감리와 전기감리의 책임 범위 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p>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감리업자”라 한다)는 소방공사를 감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방시설 등의 설치계획표의 적법성 검토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 3. 소방시설 등 설계 변경 사항의 적합성 검토 4. 소방용 기계 기구 등의 위치규격 및 사용 자재의 적합성 검토 5. 공사업자가 한 소방시설 등의 시공이 설계도서와 화재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지도·감독 6. 완공된 소방시설 등의 성능시험 7.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8.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 9.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 <p>② 용도와 구조에서 특별히 안전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시공되는 소방시설물에 대한 감리는 감리업자가 아닌 자도 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p>	<p>제18조(설계감리 등) 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력시설물공사의 관련 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2.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 설계내용의 시공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토 4. 설계공정의 관리에 관한 검토 5.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6. 설계의 경제성 검토 7.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p>제23조(감리원의 업무 범위)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자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전력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전력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 검토 14. 그 밖에 공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설계’와 ‘공사’분야의 미 분리

소방 설비분야의 감리와는 달리, 전기 분야에 있어서는 감리가 설계 감리와 공사감리로 구분되어 있다. 소방 설비의 감리에 관한 규정은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16조에 규정되어 있고 그 범위는 설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걸쳐있다. 이와 달리, 전기 분야는 전력 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제18조에서는 설계분야의 감리가 규정되어 있고, 제23조에서는 공사부문의 감리가 규정되어 있어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차이로 전기 분야에서는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로 이어지는 구조에 있어 설계와 시공 단계의 오류가 사전에 잡힐 수 있는 반면, 소방분야에서는 설계 단계에서의 오류가 있더라도 시공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오류를 바로잡기가 상대적으로 힘든 구

조로 되어 있다. 설계와 공사가 미 분리되게 되면, 시공 중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빈도가 증가하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재시공의 가능성 증가는 곧 공사기간의 연장과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건축주에 있어 재시공보다 더욱 손쉬운 다른 길을 탐색하기 위한 유인요소로 작용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공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이는 부실감리와 부패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타 분야는 설계 감리제도에서 전문성을 중시하여 전문설계 업에 의한 도서의 작성과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보조감리원의 배치 및 상주감리대상의 현실화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다(이상용, 2009). 불합리한 제도와 절차는 공무원부패 발생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패의 사전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의 개선과 개혁이라 하겠다. 비현실적인 규제, 불명확한 집행기준, 복잡한 행정절차 등의 제도적 요인들은 부패발생의 비옥한 토양으로 기능하며 사정활동의 효과성을 반감하고 부패의 재발과 재연을 가능케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고 집행기준을 명료화하는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하여 부패발생의 토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노력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채열식, 2010).

설계도서가 부실한 경우, 보완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공사 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없다. 공사감리 업무범위가 불확실하여 위법공사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며, 그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불합리하게 처벌받는 경우가 많다(김억, 2004).

설계와 공사 단계가 미 분리된 소방 시설분야의 감리는 추후 감리원의 책임범위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소방 분야의 감리원이 설계의 적정성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상기한 소방시설공사법 제16조 2호에서는 ‘설계도서의 적합성’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그러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설계까지 책임지울 수 있게 되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실제 소방시설을 설계한 설계자의 오류와 잘못을 감리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설계의 부실을 감리원이 발견하지 못하면 설계자가 아니라 감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전기 분야의 경우, 오류 있는 설계에 따라 시공되게 되면 감리자의 책임은 중대한 경우가 아니라면 훨씬 경감될 것이다. 현행 법규는 책임소재의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제의 적정성에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업무분야 확대와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

소방 설비분야의 감리인의 책임범위를 넓히는 또 다른 원인으로는 공사 자체의 적정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전기 분야와는 달리, 업무분야 이외 분야의 적법성까지 파악해야 하는 규정에 그 원인이 있다. 전기 분야에서는 시행령 제23조 1항 4호에 의거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주가 되는 반면, 소방분야는 법 제16조 1항 2호에서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에서 그 적법성까지 규정하고 있어 책임범위가 불합리하게 확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다. 이러한 사실은 법의 다른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정의)에서는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소방시설공사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는(이하 “감리”라 한다) 영업으로 규정하여 소방의 책임범위가 넓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 제8호에서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도 검토하도록 되어 있다. 피난시설과 방화시설은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감리원이 시공·관리하는 사안임에도 소방시설공사법에서 소방감리원에게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적법성 검토라는 책무를 부과하고 있어 비합리적인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동 조항 제9호에서는 실내장식물의 불연화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까지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화재안전기준 제16조(감리) 1항에 따르면, 실내장식물의 불연화(不燃化)와 방염 물품의 적법성 검토에서 소방 준공 필 후 임차인이 입주하여 인테리어 공사 시에 추가로 발생하는 실내장식물 및 방염처리 문제가 대두된다. 이로 인해, 소방준공검사 이전에 발생한 사인인지 또는 소방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발생한 사인인지 시간이 경과되면 책임여부의 판단이 애매모호하게 된다. 인테리어 업체에서 주로 관할소방서에서 방염 필 증 및 다중시설의 완비증명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소방감리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고 볼 수 있다.

4. 벌칙규정 및 기타

소방시설공사법과 전력기술관리법 모두 벌칙조항을 아래의 <표 3> 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법에서는 감리책임이 상기한 제16조제1항으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소방감리인이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그렇지만 전력기술관리법에서는 설계와 공사감리가 따로 구분되어 있고, 법령의 해석에 따라 보면 그 범위가 소방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감리 위반으로 인한 벌칙에서 소방분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전기 분야에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양형의 형평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표 3> 감리원 과실의 처벌규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1조나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계나 시공을 한 자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리를 하거나 거짓으로 감리한 자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한 자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소방시설공사 시공을 하도급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법 또는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를 위반한 전력기술인 및 그 상대방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계를 할 때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를 할 때 설계도서 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력시설물을 설계한 자 5. 제11조제4항에 따른 설계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6항을 위반한 설계사 및 그 상대방 7. 제12조제6항을 위반한 감리원 및 그 상대방

5. 소결

타 분야는 설계 감리제도에서 전문성을 중시하여 전문설계 업에 의한 도서의 작성과대상물의 규모에 따른 보조감리원의 배치 및 상주감리대상의 현실화로 설계 및 감리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진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은 점차 타 분야 설계 감리업에 종속되어 부실화되고 기술력 축적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소방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이상용, 2009). 타 분야에서는 설계에 대한 부분은 설계자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소방에서는 감리자가 설계에 대한 부분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어, 감리자가 느끼는 부담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부담의 확대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은 과도한 규제로서 그 개선책이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소방분야와 전기 분야 감리원의 감리책임과 관련한 내용들을 비교·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설계·감리원의 주요업무 및 책임비교

구분		소방	전기분야
주요 업무 특징	설계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도서의 작성	기본계획수립 및 설계도서의 작성
	감리	감리원이 설계도서의 수정 (설계변경 포함)	설계자에게 설계도서의 수정요구
책임	설계	유한책임 ·책임 없음(현행 법령에는 처벌 규정 있으나 처벌하지 않고 있음) ·도서의 부실을 감리원이 발견 하지 못하면 감리원이 처벌을 받고 있음)	무한책임 ·설계자가 도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공사현장 사고 부실공사 등은 설계자의 과실여부에 책임을 부여 ·감리는 도서에 따라 시공 하였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음.
	감리	무한책임 ·감리결과보고서에 의한 완공검사필증 교부 (준공처리)로 소방공사 의 모든 책임을 지도 록 함.	유한책임 ·타 분야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도록 감리한 경우 책임이 없음.
비 고		·소방분야는 설계도서가 부실하여 잘 못 시공된 경우에도 감리원의 도서검토 미비 및 감리업무 소홀 로 처벌하므로 감리원이 설계도서가 부실한 경우 임의로 설계 도서를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하고 있 어 타 분야와 대조. ·타 분야는 모든 설계를 건축사 및 전문설계에서 작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설계도서의 변경은 설계 자와 협의하여 설계자가 날인 후, 시공에 적용.	

IV. 현재 감리제도 합리성에 대한 전문인 인식조사 및 분석

1. 조사 개요

한국소방기술사회회원인 소방분기술사 및 한국소방기술인협회 회원인 소방기사 등 전문소방기술인을 대상으로 소방관련 제도상의 개선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수렴·분석하였다.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진행되었으며, 2012년 한국소방기술사회 소속 소방기술사 및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소방기술인 132명이 설문조사에 응하였다.

2. 여론분석 결과

1) 소방분야 근무경험도 분석

조사대상자의 소방분야 근무경력기간은 아래 <표 5>와 같다.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력자가 46.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경력자가 31.1%로 전체의 77.3%가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전문경력자였다. 따라서 본 조사는 숙련된 소방 감리 전문인들의 인식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다 하겠다.

<표 5> 소방분야 근무경력

답변	빈도(명)	백분율(%)
5년 이하	6	4.5
10년 이하	24	18.2
15년 이하	41	31.1
20년 이하	61	46.2
합계	132	100

2) 전공학문분야 분석

조사대상자의 전공학문분야 분석은 아래 <표 6>과 같다. 전체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이공계 출신자가 전체의 96.2%였다. 소방관련 기술인은 역시 이공계 출신이 대부분 종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고의 조사에 있어 소방 감리도 이공계 출신이 많다는 점은 전문적 시각에서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의미하며 이는 조사의 전문적 객관성을 간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 전공학문분야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이공계	127	96.2
인문계	3	2.3
예체능계	1	0.75
기타	1	0.75
합계	132	100

3) 연령대 분석

조사대상자의 연령대 분석은 아래 <표 7>과 같다.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40대 이상 50대 미만이 45.5%, 50대 이상이 34.8%로 전체의 80.3%가 40대 이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앞서 조사한 전문 경력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연령대 또한 40대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연령대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30대 이하	2	1.5
30대 이상 40대 이하	24	18.2
40대 이상 50대 이하	60	45.5
50대 이상	46	34.8
합계	132	100

4) 학력별 분석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분석은 아래 <표 8>과 같다.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대졸이 65.9%, 대학원 석사 이상이 31.05%로서 전체의 96.95%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소지자였다.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출신전공이 이공계라는 점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설문이 응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표 8> 학력별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고졸	3	2.3
대졸	87	65.9
대학원석사 이상	41	31.05
기타	1	0.75
합계	132	100

5) 설계자의 오류를 소방공사 감리자에게 책임 지우는데 대한 분석

아래 <표 9>에 나타내었듯이 설계자의 오류를 소방공사 감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데 대한 설문 결과,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인권침해조항이라고 답한 경우는 43.25%, 관료주의적 행정편의 사고에서 파생된 법령이라고 답한 경우는 56.0%로서, 전체의 99.25%가 부당한 법령이라는 답변이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 ① 제4조제1항의 2.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적법성과 기술상의 합리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에서 이는 개선되어야 할 제도이다.

실사 설계 오류가 발견되면 감리 자가 마음대로 설계를 변경할 수도 없는 것이다. 설계자를 설득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설계자가 설계오류를 수정하여야 함에도 설계오류 시 감리 원에게 허위감리의 운운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소방시설 등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검토 협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로 인해 타인이 설계한 설계오류에 감리원이 적법성검토라는 직무를 부여하여 처벌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표 9> 설계자의 오류를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책임을 지우는데 대한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인권침해 조항이다.	57	43.25
관료주의적 행정편의 사고에서 파생된 법령이다.	74	56.0
도의적 책임이 있어 형사책임 도 있다.	1	0.75
인권침해 규정이어도 감수하여야 한다.	0	0
합계	132	100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6조(감리)제1항 1에서 9의 업무수행 범위에 대한 의견분석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수행업무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고 답한 경우가 90.95 %로 대다수의 의견으로 <표 10>과 같이 집계되었다.

<표 10> 소방시설공사사업 제16조(감리)제1항 1에서 9의 업무수행범위에 대한 의견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수행업무범위가 너무나 광범하다.	120	90.95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11	8.3
1인이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0	0
직무수행이 어려워도 어쩔 수 없다.	1	0.75
합계	132	100

현행 소방공사 업 법 시행령 별표4에서는 상주소방감리원의 배치를 1인 이상으로 규정 하고 있어 대부분의 신축현장에는 소방감리원 1인이 방대한 규모의 건축현장을 담당 하고 있다. 예를 들면 40층 이상 고층건물과 20만㎡ 이상의 건축물에는 소방기술사 1인 이상의 상주 감리 원 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20만㎡ 이상 100만㎡ 또는 40층 이상 150층 초고층 건축물도 1인이 상주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은 감리업무를 100% 완벽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소방감리 원 1인이 감리하는 20만㎡ 이상 또는 공동주택 약 2,000세대 현장의 경우 전기감리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158호 전력기술관리 법 운영요령 제25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의해 책임감리원 및 보조감리원 2-3명이 근무하며 이에 더하여 비상주감리원 1인이 상주감리원을 지원 하에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 신축공사현장의 상주 소방감리원도 타 분야 공정처럼 건축물의 규모별로 몇 사람이 팀을 이루어 공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도록 지도 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1인 이상 배치를 규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1인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더하여 1일 이상 결근 시에는 대체 감리 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한 소방감리

- 1) 비용문제로 공사 현장엔 상주 감리원 1명뿐 전기·건축 감리보다 규정 미흡해 부실 우려 부산 해운대구 우신 골든 스위트 아파트 화재사건을 계기로 화재 진압뿐 아니라 소방감리 등 예방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화재에서 고가사다리차헬기 등 고가의 소방장비마저 고층건물 화재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재 예방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로 소방감리는 공사 현장에서 도면대로 소방시설이나 설비를 제대로 갖춰 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관할 소방서에 보고하는 업무다. 문제는 소방감리의 경우 건물 내부 구조의 특성이나 공사 일정 등에 관계없이 연면적 3만㎡ 이상 건물만 '1인 이상 되어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대형 건축공사장에만 한명의 상주감리 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공사현장에서는 비상주 감리원이 보통 1주일에 한차례 정도 현장을 둘러 보는 정도다. 소방감리의 부실 우려가 근본적으로 높은 이유다. 건설현장 15년 경력의 강모(42)씨는 "공사 현장 대부분은 비용 문제로 소방감리를 한명만 둔다."며 "심지어 중소규모 건물은 한명이 3-4개 현장을 맡기도 하며, 최근 첨단공법 도입으로 공사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 업무가 아주 벅차다"고 말했다. 반면 전기등 다른 감리는 건축 연면적이나 세대수에 비례해 감리 원을 추가 배치토록 하는 등 사정이 다르다. 전력기술관리 법 적용을 받는 전기감리의 경우 공동 주택 300-800세대는 책임감리 원 1인을 포함한 감리 원 1인 이상을 배치 해야 하며, 800세대 이상은 책임감리원 1인 이외에 보조감리 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의 50% 이상 배치해야 한다. 또 400세대를 초과할 때마다 공사 기간 대비 50% 이상 추가 배치 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 감리도

회사에 예비기술자를 항시 대기시킬 수 없는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한 규정인 것이다. 몇일 정도의 감리 원 부재 시에는 건설사 책임시공 기술자가 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에도 국가가 법 규정으로 개인의 근무규정을 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인 것이다.²⁾ 감리원의 근무상황은 재임하는 소속회사와 건축주에게 일임시킬 사안인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현장에서 악전고투하는 소방감리 엔지니어들을 옥죄는 촉진제 역할을 하며, 이로 말미암아 선량한 공무원들을 부패의 유혹에 현혹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정부패의 위협사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법·제도라는 게임의 룰이 필요하며 이런 사회적 규범과 법칙이 준수되면 부패의 소지도 줄어 나가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은 부정부패에 관련된 제반 제도적 취약점을 보완하고 부패소지를 극소화 하여야 한다. 공무원과 국민의 의식과 관행을 뒤바꾸는 종합적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성을 구현하여 사회 전범위에 걸쳐 반부패 제도가 당연시된 사실구조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연면적 1만~3만㎡에는 책임감리 원 1인을 포함, 감리 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3만㎡ 이상은 책임감리 원 이외에 보조감리 원 1인 이상을 공사기간대비 50% 이상 배치한다. 다만 2만㎡를 초과할 때마다 50%이상 추가 배치토록 하는 등 건물 규모에 따라 세분화하고 있다. 소방감리원은 시공사나 건물주에게 불리한 위법행위를 지적해야 하는데도 대부분 1인만 배치하도록 조장한 법규로 인해 업계 간 과다 경쟁이 발생, ‘갑’의 위치인 시공사나 건물주의 눈치를 점점 더 보게 되는 형국이다. 부실감리가 성행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방감리는 화재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법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규정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일보, 2010).

- 2) “소방감리원의 공휴일 휴무를 인정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냈더니 소방방재청으로 재배당 했고 담당자는 언제나 그랬듯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형식적 답변을 했다. 그래서 다시 인권위원회에 인권위가 직접 국민의 인권개선에 나서라고 민원을 냈다. 접수를 확인하고 진화를 했더니 제도개선 사항이라 시간이 걸리니 기다리라고 한다. 이럴 땐 기술자들이 저마다 민원을 내야 하는데 여름이라 그런지 휴가 모드로 반응이 없다.”고 소방기술인협회 고문께서 face book에 올리신 글에 대해 필자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관련 문제인데 이런 사안에서는 여름휴가뿐만 아니라 4계절 휴가인 것이 현실로서 언제나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강 건너 불구경”이다.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등 모든 국민이 공휴일(公休日)에 휴무(休務)하는 것은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알고 있는 상식이다. 소방 감리원 배치기준에서 1인 이상으로 되어있어 대부분의 공사현장에 1명이 단독 근무하는데 공휴일 쉬지 않고 근무하라는 것은 숨통 터지게 하는 억지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이 살아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비상주 소방감리 현장에서는 1주일 중 비상주감리원이 출근하는 단 하루만 건축공정관련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건축주와 소방감리회사간 감리용역계약은 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중 22일간 근무로 계약체결이 된다. 이와 관련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운영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을 비상식적으로 운영하다보니 소방감리원의 공휴일 근무규정 운운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공휴일에 휴무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위반하는 것이 아닌 당연한 것을 이를 시비하는 자체가 위법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도를 개선할 사안이 아니라 이처럼 비상식적으로 제도를 남용해서인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제재를 가해야할 것이다. 건축신축현장에서의 근로자 근무와 관련해서는 건축주와 감리용역회사, 시공사간에 협의해서 진행할 일임에도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규제(規制)인 것이다. 규제개혁(規制改革)이란 바로 이러한 사안(事案)을 개혁하는 것이다(뉴스타운, 2012).

7) 제32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관련 의견분석

<표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과실의 경·중을 명시 하지 않음으로서 벌을 부과함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되어 월권 및 부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경우가 60.6 %, 처벌규정 세분화로 사소한 실수는 처벌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한 경우가 38.65 %로 전체의 99.25 %가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11> 제36조(벌칙)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관련 의견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과실의 경, 중을 명시 없이 애매모호해서 공무원의 월권, 부패 촉진한다.	80	60.6
처벌규정 세분화로 사소한 실수는 처벌제외	51	38.65
소방감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	0	0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과실도 엄벌해야 한다.	1	0.75
합계	132	100

소방시설공사 업 법 제16조(감리)제1항 1-9까지의 방대한 감리업무를 100%완벽하게 수행하려면 다수인의 감리원이 배치된다고 가정해도 과실은 발생할 수 있으며 단독 근무하는 현실을 감안 할 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임에도 제36조(벌칙)에서 이를 위반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벌칙조항(罰則條項)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국가 화재안전 기준은 총 32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 기준에 벗어날 경우 뭉뚱그려서 화재 안전기준 위반 또는 허위감리의 명을 씌우는 것은 개정되어야 한다.

그 위반의 경, 중을 가려서 벌칙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특별피난계단 또는 전실의 가압제연설비 및 거실 제연설비 등은 화재안전기준을 철저히 지켜 시공되어도 당초 건축설계와 소방 설계의 부적절함, 사계절에 따른 기온차이, 대기압 상태 및 유지관리 상태 등에 의해 변수가 많아 설비의 신뢰성이 매우 취약하다. 소방 설비의 설계 또는 시공에 있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설비의 시스템이 작동불능으로 말미암아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고의 또는 과실행위에 한하여 벌칙을 받아야 할 것이다.

8) 제16조(감리)제1항의 각호 중 2, 3, 8, 9에 의한 직무관련 벌칙에 대한 의견분석

본 항목에 대해서는 <표 12>에 나타냈듯이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설계자 또는 타 공정 감리자의 수행업무를 대신한 처벌은 기본권 침해라고 답한 경우가 전체의 95.3 %이었다.

〈표 12〉 제16조(감리)제1항의 각호 중 2, 3, 8, 9 에 의한 직무관련 벌칙의견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설계자 또는 타 공정 감리자의 수행업무를 대신한 처벌은 기본권 침해다	122	95.3
소방감리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면 별 문제가 없다.	5	3.9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사소한 과실도 엄벌해야 한다.	1	0.8
1인이 충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다.		
합계	128	100

이는 타인이 설계한 설계도서 및 건축사가 설계하고 건축감리원이 감리한 피난 및 방화시설과 준공 후 소방감리원이 이직(離職)한 뒤에, 입주자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방염처리 등 업무관련 과실에 관해서 소방감리원이 그 책임을 지는 벌칙조항까지 규정하므로 이는 기본권침해라는 의견 분석이었다.

소방감리원 1인 단독으로 광활한 신축현장의 소방시설 시공을 100% 완벽하게 지도 감리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해도 추호의 시행착오 없이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총 320여 페이지에 달하는 깨알 같이 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설계의 오류를 찾아내고 시공에 완벽을 기할 수 없는 것임에도 조그만 실수라도 있게 되면 화재안전기준을 위반 또는 허위감리로 적발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罰金)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선량한 엔지니어를 범법자(犯法者)로 내몰고 소속회사도 행정처분(行政處分)을 받게 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다.

9) 소방감리원으로서 건축 준공 후의 심리상태 분석

소방감리원으로서 건축 준공 후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결과를 <표 13>에서 나타냈듯이 132명의 조사대상자 중 전체의 94 %가 사소한 과실이 적발되어 입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불안하다고 답변하여 소방업무에 대한 자긍심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신축건축현장에서 단독으로 방대한 감리업무를 완료하고 이직한 상태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되는 소방시설점검에서 사소한 과실이 적발되면 입건조치 되는 등의 경, 중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 화재안전기준 위반 또는 허위감리의 명을 씌우는 처벌위주의 규제로 말미암아 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방 감리 전문가들의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소방 감리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감리 관련 규정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표 13> 소방 감리원으로서 건축 준공 후의 심리상태 분석

답변	빈도(명)	백분율(%)
사소한 과실이 적발되어 입건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불안하다.	124	94
단속반에 적발되어도 사정하면 해결 될 것이다.	6	4.5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향후의 일은걱정하지 않는다.	2	1.5
직무를 잘 수행했으므로 염려 없다.	0	0
합계	132	100

V. 결론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귀중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감리, 유지관리가 삼위일체(三位一體)로 이루어지고, 각 공정에서 책임한계가 합리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소방 설비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감리제도의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오고 있고, 본고는 전기 감리분야와의 비교 및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규제의 합리성을 고찰한 후, 소방감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방시설분야는 법의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전기 분야는 ‘시행령’의 수준에서 규정되어 있어, 소방 감리제도의 제도적 경직성이 높았다.

둘째, 설계와 공사 단계가 미 분리된 소방 시설분야의 감리제도로 인해 소방분야는 추후 감리원의 책임범위가 확장되어, 설계의 적정성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방분야는 설계부문과 공사부문이 미 분리되는 것은 물론, 그 적법성 여부까지 판단하도록 해석되어 감리인의 책임범위가 넓었다. 벌칙규정 또한 전기 분야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현재의 감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업무범위 및 책임범위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고찰한 제도적 요인들로 인해, 건축 준공 후에도 소방감리 전문가들의 불안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소방분야 감리인의 책임범위의 규제 합리성을 전기 분야와 비교 고찰하였는데, 추후 다른 분야와의 비교나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검토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설계자나 타 공정 건축 감리원이 수행하는 직무상 오류를 소방 감리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소방감리원의 직무수행범위 및 벌칙조항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은 부패한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감리 기술인들을 옥죄는 축진제 역할을 하며, 이로 말미암아 선량한 공무원을 부패의 유혹에 현혹 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과실의경, 중을 구체화해서 처벌하는 제도개선으로 민·관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선진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소방은 점차 타 분야 설계 감리업에 종속되어 부실화 되고 기술력 축적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들면서 소방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제 소방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수립은 소방현실과 특성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소방보다 앞서 제도를 정착시킨 타 분야의 설계 및 감리제도를 모델로 삼아 개정방향을 설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미 소방단체와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제출된 협회의 소방시설공사업 법시행령 일부개정 청원(안)의 입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억. 2004. 설계·감리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연구(건축법령 및 건축사법령 관련)보고서.
- 김종우. 2009. 소방공사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재관. 2011. 소방감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 신성훈. 2006. 소방공사감리제도의 실효성 향상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용. 2009. 소방법령 운용실태 고찰: 소방공사 및 유지관리 중심으로. 한국화재소방학회지. 5(1): 41-47.
- 이재성. 2011. 소방공사 감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력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 최만철, 김병석. 2011. 상주 소방감리업무의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3(1): 31-39.
- 채열식. 2010. 한국 소방공무원의 부패 저감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 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자료집: p81-89.
- 뉴스타운. 2012. 오상환. 소방감리원은 공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가? 규제개혁이란 바로 이런 사안을 개혁하는 것이다. 2012. 8. 23.
- 한국일보. 2010. 소방 감리부터 허술. 2010. 10. 05.

吳尙煥: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소방감리 기술사로 활동 중이다. 주요 관심분야는 소방감리, 소방규제 등이다(oshwn@hanmail.net).

尹明悟: 일본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재난과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기업의 재난 대비활동 인식 비교연구(2013)” 등이 있으며, 관심분야는 화재소방, 안전규제 등이다(yoonmo@empas.com).

투 고 일: 2013년 10월 21일

수 정 일: 2013년 11월 26일

게재확정일: 2013년 11월 28일

Comparative Study on Responsibility Span of Firefighting Facility Inspection Area

– Comparing with Electricity Facility Area –

Sang Hwan Oh, Myong O Yoon

To prevent a fire accident for the protection of precious human life, the first thing is to combine building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maintenance into one like the trinity system. This study reviewed the rationality of construction supervision codes about firefighting facilities with comparing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First of all, the supervision's spasticity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is higher than electricity area. Second, The span of responsibility is wider and severity of punishment is stronger than electricity supervision codes. Because of these regulations, supervision specialists of firefighting facility area perceived that the codes are irrational and overly regulated. Survey revealed that irrationality of the codes leads to high anxiety level of supervision specialists.

Key words: design, construction supervision, maintenance, regulation